

의안번호	2218925
의 퇴 인	정태호 의원
회 답 일	2026. 5. 19.
추계번호	26E2587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전자신고 세액공제 명칭 변경 및 공제액 법률에 규정 등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의 명칭을 변경하고, 공제액을 확대함에 따라 소득세·법인세·부가가치세는 2027년 986억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4,928억원(연평균 986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- 상기 금액은 영세납세자·부가가치세 간이납세자에 대한 추가 세액공제액은 반영하지 않은 금액으로, 이를 반영할 경우 세수효과가 커질 가능성이 존재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소득세

(단위: 억원)

	2027	2028	2029	2030	2031	누적	연평균
납세협력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공제액 (안 제104조의8)	-986	-986	-986	-986	-986	-4,928	-986
- 소득세	-727	-727	-727	-727	-727	-3,636	-727
- 법인세	-14	-14	-14	-14	-14	-71	-14
- 부가가치세	-244	-244	-244	-244	-244	-1,220	-244

주: 향후 5년간의 세수효과를 추계한 결과로, 제시된 기간 이후로도 재정수입 감소가 발생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
1	안 제104조의8 (납세협력비용에 대한 세액공제)	○ ‘제104조의8’ 제목 변경 - (현행) 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 - (개정안) <u>납세협력비용에 대한 세액공제</u> ○ 세액공제액을 법률로 규정하고 공제액 확대 - (현행)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* * 종합소득세·법인세: 1만원, 양도소득세: 2만원, 부가가치세: 5천원 - (개정안) 법률로 정하는 금액** ** 종합소득세·양도소득세·법인세: 2만원 (영세납세자(대통령령)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) 부가가치세: 1만원 (간이과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)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
1	안 제104조의8 (납세협력비용에 대한 세액공제)	○	다만, 아직 시행령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구체적인 영세납세자·간이과세자 등의 기준 및 건당 공제액을 알 수 없어, 영세납세자 등에 대한 추가 공제액은 동 추계에서 제외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이 2026년 중 통과되어 2027년 신고분부터 적용된다고 가정
-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 실적을 바탕으로 세목별 공제액 상향효과를 반영하여 개정안의 세수효과를 추계
 - 현행 규정 하에서는 아직 집계된 실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¹⁾, 2024년 세액 공제 실적을 기준으로 1건당 공제액 변화를 반영해 현행 기준 실적을 추정
 - 2024년 기준 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 실적은 종합소득세 1,455억원, 양도소득세 13억원, 법인세 29억원, 부가가치세 488억원 수준
(종합소득세·양도소득세·법인세: 1건당 2만원, 부가가치세: 1건당 1만원)
 - 현행은 종합소득세·법인세·부가가치세의 1건당 공제액이 절반으로 감소하였으므로, 2024년 실적에 50%를 반영하여 추정
 - 개정안은 종합소득세·법인세·부가가치세의 전자신고 1건당 공제액을 현행 대비 2배 확대하는 내용으로, 이를 비례적으로 고려하여 세수효과 추정
 - 2024년 실적을 기준으로 계산한 세수효과가 향후 유지될 것으로 가정
 - 「조세지출예산서」 상 감면실적 추이를 살펴보면,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10%를 상회하는 높은 증가세가 나타났으나, 전체 감면액의 70% 이상을 차지하는 종합소득분 공제액이 2025년 1,453억원으로 나타나 전년(1,455억원)과 유사한 수준으로 확인되며, 향후 가파른 증가세는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

1) 2026년 2월 27일 신고분부터 적용

- 다만, 개정안과 관련하여 시행령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아, 영세납세자·간이과세자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 및 건당 공제액을 알 수 없으므로 영세납세자 등에 대한 추가 공제액은 동 추계에서 제외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(제도개요) 납세자가 직접 홈택스 등을 통해 해당 세목을 전자신고하거나 세무대리인이 납세자를 대리하여 전자신고하는 경우, 전자신고 1건당 일정 금액을 소득세·법인세 또는 부가가치세에서 공제함
 - 세액공제액 (대통령령으로 규정)
 - 종합소득세·법인세: 건당 1만원
 - 양도소득세: 건당 2만원
 - 부가가치세: 건당 5,000원
 - ※ 참고로 2026년 2월 27일 전에는 종합소득세·법인세는 건당 2만원, 부가가치세는 건당 1만원을 세액공제
 - 연간 공제한도: 세무대리인(개인): 300만원, 세무법인(회계법인): 750만원
- (감면 실적) 동 특례의 감면실적은 2021년까지 1,200억원 중반 수준을 유지하다가, 2022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24년 1,959억원까지 상승

[표 2] 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 실적: 2019~2024년

(단위: 억원, %)

	2019	2020	2021	2022	2023	2024
감면실적	1,258	1,250	1,273	1,544	1,757	1,959

자료: 정부의 「조세지출예산서」, 각 연도

(2) 추계 방법

- 2024년 세액공제 실적을 바탕으로 현행 기준으로 공제액을 추정한 후, 개정안의 공제액 증가 수준을 반영하여 공제액 확대 규모를 추정
 - 건당 공제액 변동에 따라 세목별 실적이 비례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가정

[표 3] 개정안에 따른 공제액 증가 규모: 2024년 실적 기준

(단위: 억원)

		건당 공제액	종합소득세	양도소득세	법인세	부가가치세	계
2024년 실적 ¹⁾		종합소득세: 2만원 양도소득세: 2만원 법인세: 2만원 부가가치세: 1만원	1,455	13	29	488	1,984
2024년 기준 추정액	현행 (A)	종합소득세: 1만원 양도소득세: 2만원 법인세: 1만원 부가가치세: 5천원	727	13	14	244	999
	개정안 (B)	종합소득세: 2만원 양도소득세: 2만원 법인세: 2만원 부가가치세: 1만원	1,455	13	29	488	1,984
차이 (B-A)			727	0	14	244	986

주: 1) 세목별 실적은 세목별 귀속연도/신고시점 등을 반영하여 재구성한 것으로 실제 실적과 차이가 존재할 수 있음

자료: 국세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- 2024년 실적을 기준으로 계산한 세수효과가 향후 유지될 것으로 가정

(3) 추계결과

- 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의 명칭을 변경하고, 공제액을 확대함에 따라 소득세·법인세·부가가치세는 2027년 986억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4,928억원(연평균 986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 - 상기 금액은 영세납세자·부가가치세 간이납세자에 대한 추가 세액공제액은 반영하지 않은 금액으로, 이를 반영할 경우 세수효과가 커질 가능성이 존재함

[표 4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소득세

(단위: 억원)

	2027	2028	2029	2030	2031	누적	연평균
납세협력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공제액 (안 제104조의8)	-986	-986	-986	-986	-986	-4,928	-986
- 소득세	-727	-727	-727	-727	-727	-3,636	-727
- 법인세	-14	-14	-14	-14	-14	-71	-14
- 부가가치세	-244	-244	-244	-244	-244	-1,220	-244

주: 향후 5년간의 세수효과를 추계한 결과로, 제시된 기간 이후로도 재정수입 감소가 발생

IV. 부대의견

□ 없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1과	이정훈	박연서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정훈	02-6788-4669	nororand@assembly.go.kr